

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근절 지지 정책	개정차수	최종 수정일
	0	2023.02.10

## 1. 목적

- 1.1 본 문서는 효성(이하 '회사')이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함양에 기여함을 그 목적을 둔다.
- 1.2 본 정책은 효성그룹 인권경영 정책의 부속서로 적용하며, 회사는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을 비롯하여 UNGC 10대 원칙, 국제노동기구(ILO)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, OECD가이드라인, 현대판 노예방지법(Modern Slavery Act)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준수하여 기업 내·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근무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## 2. 용어의 정의

- 2.1 '강제노역'이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'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'되었으며,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및 서비스를 말한다.
- 2.2 '인신매매'란 '착취'를 목적으로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, 합당한 대가없이 노동력을 착취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. 이에는 성매매 강요 등을 통해 성을 착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.
- 2.3 상기 외 용어의 정의는 효성그룹 인권경영 정책에 기재된 정의를 따른다.

## 3. 적용범위

- 3.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, 국내/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,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3.2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, 대리점,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3.3 다만,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## 4.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근절에 대한 일반원칙

- 4.1 회사는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,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의 금지를 정한 세계인권선언 제 4조를 존중한다.
- 4.2 회사는 전 사업장의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한 정보를 제공하며,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지 않는다.

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근절 지지 정책	개정차수	최종 수정일
	0	2023.02.10

- 4.3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며,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한다. 아울러 회사는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으며,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.
- 4.4 회사는 공급업체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업체가 인신매매, 아동노동 또는 강제 노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며, 평가 및 실사 등을 통해 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, 공급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의 종료 등을 적극 검토한다.
- 4.5 회사는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준수하여 기업 내·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.

끝.